

[별표 4]<개정 2018. 7. 24., 2026. 5. 7.>

직원 전보경로(제17조 관련)

① → ② → ③					
①	비서실, 운영지원과, 기획조정관실, 인권상담조정센터	②	침해조사국, 차별시정국, 군인권보호국	③	정책협력국, 국가인권교육센터

- ※ 침해조사국, 차별시정국, 군인권보호국 최초 발령자는 3년의 전보제한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.
- ※ 국(局)내 전보는 전보제한기간 산정시 근무기간을 통산함.
- ※ 인권사무소 전보의 경우 전보경로를 적용하지 아니함.
- ※ 출납업무 수행자의 경우 국·관 간 전보시 이를 고려하여 배치함.